# 전향제도,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의 지지대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학 교수

한동안 세인들의 이목을 점하고 있던 이른바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보도가 최근에는 뜸한 실정이다. 지나치게 과다한 관심을 보이던 언론이 이제는 무시한다고 느낄 정도로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송두율 교수는 "미진한 반성"으로 인해 마침내 구속 기소되었다.

물론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는 반성할 경우 '선처'하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지만, 송 교수 사건의 경우와 같은 사례는 아무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그것은 과거 20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것들이며, 그 과정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 민주화 과정에서 더 이상 그러한 관행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믿어졌던 '전향제도'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전향이란 본래 방향 전환의 약어로서, 특정한 가치나 신념체계를 가진 자가 이와 다른 가치나 신념체계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철학적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전향은 그 보다 훨씬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즉 그것은 반체제운동의 지도자나 진보적인 지식인이 국가권력의 강제에 굴복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을 변경한다는 의미로, 외부세계를 향해 과거의 가치에 대한 비판과 지배 권력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물론 그 형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1990년대 초반에는 단순하게 "법을 준수 하겠다"는 정도면 전향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사상전향제도가 갖는 폭력성과 비인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등장한 것은 유신체제가 성립한 직후인 1973년부터 1976년까지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비전향 사상범의 절멸 정책이었는데, 사상범에게 전향과 죽음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사상범들은 "너희들에게는 전향이냐 죽음이냐 라는 선택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전향제도 등 사상통제정책이 시행되는 배경을 보면, 그것이 권위주의체제의 형성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1931년에 처음 시행된 일제 하의 전향제도는 만주사변 및 군국주의의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 국가보안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전향제도가 다시 도입된 1948년과 1949년이 분단체제의 완성과 이승만 독재체제의 출발이었다. 반공법이 제정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직후였다. 비인간적인 폭력을 통해 사상범에 대한 강제전향공작이 일어난 시기는 1973년으로 유신체제가 들어선 다음이었다. 반공법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1980년의 국가보안법 개정은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을 제외하면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 권위주의체제 형성과 같이 해

이러한 전향제도가 되살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전향제도의 폐지는 1970년대 이래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피와 땀 속에서 이룩한 몇 안 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시적인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법학적인 비판과 인도

적 차원에서의 비판, 그리고 민주화운동 차원에서의 비판이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UN 인권위 등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에서 비인도적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반인권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향제도는 1998년 7월 준법서약제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장기수들이 출소하면서 그마저도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미 죽어버린 정의에 반하는 제도를 되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전향을 강제하는 제도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사상전향제도는 처음에는 검사나 경찰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49년의 국가보안법 개정 시 보도구금조항이 삽입되고, 그에 따라 보도연맹이 조직되자 엉뚱하게 그 규정을 강제적인 사상전향의 근거조항으로 받아들이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1956년 법무부장관령에 의해 공식제도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부권국가론에 근거한 권위주의적인 형사사법 관행으로, 엄청난 강제력을 발휘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 법적 근거 없어

셋째, 전향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인권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1940년에 제정된 미국의 파괴활동방지법(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이 사상 통제 규정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매카시즘(McCarthyism)의 선동정치 이후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더욱이 전향을 강제하는 식의 규정은 없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적 안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치시절이었고, 그 이후로는 유사한 법률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19세기에 사상범죄자는 반드시 배심재판제에 회부해야 하며, 또 사형선고를 내릴 수 없다고 하는 등 사상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규정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23년 라드부루흐(G. Radbruch)가 한 법언, 즉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되며 오직 논쟁할 수 있을 뿐"이라는 원칙이 근대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을 통한 교화 혹은 정신개조 등과의 비교가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미루겠다.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인권적 제도

넷째, 21세기에 어울리는 국가 및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제하는 전향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전향제도와 같이 사상을 통제하는 제도는 분단체제와 권위주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20세기의 야만적인 유물일 뿐이다. 또 한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여 특정 사실의 전후 맥락도 모르는 채 다수의 힘으로 매도하는 것 역시 성숙되고, 열린사회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경계인'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탈냉전-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날은 분단의 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고,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항도 있지만, 2000년 '6·15 선언' 이후 한반도는 탈냉전-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분단시대의 과거 행위를 대상으로, 그것도 피해자도 없는 이타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분단시대의 법과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몸부림이든지, 과거의 권위주의시대를 되살리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탈냉전-평화통일시대를 위해, 보다 열린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분단체제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다.